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해 양 경 찰 청 (인사담당관)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평가기준인 팔다리의 완전성에 대한 규정을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전문의의 판정으로 신체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체력검사 종목을 개선하여 기초체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자격기준을 채용 직급에 적합한 자격증으로 개선하여 해당 직위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경찰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연계할 수 있도록 경정이하 계급의 근무성적평정 중 객관적 평정요소의 배점을 조정하고 심사승진 시 부여되는 자격증 가점을 해양경찰 직무와의 관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자격기준 변경(안 별표 2)
- 나.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의 평가기준 변경(안 별표 4)
- 다. 경찰공무원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변경(안 별표 5)
- 라. 경정이하 계급의 근무성적평정 객관평정요소 배점 개선(안 별표 6, 별지 제16호)
- 마. 해양경찰 직무관련성을 고려하여 자격증 가점 개선(안 별표 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계급 경과	경정 이상	경감·경위	경사 이하
해양	1급 항해사, 1급 운항사	2급 항해사, 2급 운항사	3급 항해사, 3급 운항사, 4급 항해사, 4급 운항사, 5급 항해사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조선기술사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
			유도·검도·태권도 2단 이상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합기도 2단 이상(법인으로서 중앙본부가 있으며, 8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각 지부에 10개 이상의 도장을 갖추고 있으면서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종 대형운전면허,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축

계급 경과	경정 이상	경감 · 경위	경사 이하
			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한식 · 양식 · 일식 · 중식 조리 기능사 이상
			화공기사, 해양환경기사, 산업 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 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 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 사, 위험물기능사, 화학분석기 능사, 환경기능사
수사 (신설)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변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항공	운송용조종사 (비행기 또는 회 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비행기 또 는 회전익항공기)	
	항공정비사(비 행기 또는 회전 익 항공기 정비 경력 10년 이상)	항공정비사(비행기 또는 회전익 항공기 정비 경력 6년 이상)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정보 통신	정보통신기술 사, 전자응용기 술사	통신설비기능장, 전자기 기기능장,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전자기사, 전자계산기기사, 무선설비산업 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전자 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자계 산기제어산업기사, 무선설비기 능사, 통신기기기능사, 전자기 기기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 전 파전자통신기능사, 방송통신기 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정보관리기술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

계급 경과	경정 이상	경감 · 경위	경사 이하
	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보안산업기사
특임	화약류관리기술사	잠수기능장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수상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

비고

1. 경과별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을 단축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별표 4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체검사의 평가기준(제28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관련)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팔다리는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는 것으로 전문의의 판정이 있어야 한다.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 (色神)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 색신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것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문신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비고

체격 항목 중 팔다리가 완전한지 ~~및 문신~~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별표 5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제28조제2항 관련)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 자	100미터 달리기(초)	13.0 이내	13.1~ 13.5	13.6~ 14.0	14.1~ 14.5	14.6~ 15.0	15.1~ 15.5	15.6~ 16.0	16.1~ 16.5	16.6~ 16.9	17.0 이후
	윗몸 일으키기 (회/60초)	58 이상	57~55	54~51	50~46	45~40	39~36	35~31	30~25	24~22	21 이하
	팔굽혀펴기 (회/60초)	58 이상	57~54	53~50	49~46	45~42	41~38	37~33	32~28	27~23	22 이하
	좌우약력 (kg)	61 이상	60~59	58~56	55~54	53~51	50~48	47~45	44~42	41~38	37 이하
	50미터 수영(초)	130초 이내									
여 자	100미터 달리기(초)	15.5 이내	15.6~ 16.3	16.4~ 17.1	17.2~ 17.9	18.0~ 18.7	18.8~ 19.4	19.5~ 20.1	20.2~ 20.8	20.9~ 21.5	21.6 이후
	윗몸 일으키기 (회/60초)	55 이상	54~50	49~45	44~40	39~35	34~30	29~25	24~19	18~13	12 이하
	팔굽혀펴기 (회/60초)	50 이상	49~46	45~42	41~38	37~34	33~30	29~26	25~22	21~19	18 이하
	좌우약력 (kg)	40 이상	39~38	37~36	35~34	33~31	30~29	28~27	26~25	24~22	21 이하
	50미터 수영(초)	150초 이내									

비고

1. 체력검사의 평가 종목 중 1종목 이상에서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50미터 수영은 기준 시간 이내에 완주하지 못한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2. 100미터 달리의 경우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3. 50미터 수영의 경우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린 수치를 기준으로 남자 130초, 여자 150초 이하인 경우 해당 종목을 합격한 것으로 보며, 체력검사 점수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4. 체력검사 종목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별표 6 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평정기준

구 분	내 용	단 위	배 점
기본 근무 점수 (6점)	27일 이상 근무	월	0.5
	24일 이상 26일 이하 근무	월	0.4
	23일 이하 근무	월	0.3
업무 수행 점수 (9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 - 인명구조, 조난선박 등 구조 및 지원 업무 - 선박 안전관리,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	건	0.3
	범죄 예방, 각종 해양범죄 단속·수사 및 감찰조사 업무	건	1.5
	고소·고발·진정 등 각종 민원(사건) 접수·처리	건	0.1
	해상경비·경호 및 대테러 작전 수행 등 해상치안 관련 업무	회	0.1
	해상치안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회	0.1
	해상교통과 해상교통 위해의 방지를 위한 업무	회	0.1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회	0.1
	각종 연구·분석 및 장비·기술 등 개발 업무	건	0.1
	각종 장비 운영, 정비업무 및 타 부서 지원 업무	회	0.1
	각종 계획 수립 및 보고서 기안·시행·결재	회	0.1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회	0.1

비고

1. 평정 대상기간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적용기간 중에 승진을 한 경우에는 해당 계급 승진일부터 산정한다.
2. 근무에는 휴일·휴가(연가, 병가 등)·출장·파견 등이 포함된다. 다만, 직위해제·징계·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3. 파견 및 장기교육 대상자는 업무수행 점수를 3점으로 한다.

4. 위 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15점으로 하고, 이를 9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평정점으로 한다.
5. 그 밖에 해양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별표 6 제2호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포상 실적 평정기준

가. 상

훈격 구분	가점
훈장	20
포장	15
대통령 표창	12
국무총리 표창	7
해양경찰청장, 각 부처의 장관(장관급 공무원 및 처장을 포함한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표창	5
청의 장, 통합방위본부장, 각 군 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 특별검사,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군사령관 표창	4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경찰대학장·경찰인재개발원장· 중앙경찰학교장·경찰병원장·지방경찰청장·지방검찰청검사장· 군단장(교육사령관 포함)의 표창	3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연구센터장, 해양경찰정비창장, 중앙해양특수 구조단장, 101단장·기동단장·사단장·경찰서장 표창	2
지방검찰청지청장·여단장 표창	1.5
합정장·연대장 표창	1

나. 벌

징계·경고·주의 구분	감점
강등	30
정직 3월	25
정직 2월	20
정직 1월	15
감봉 3월	10
감봉 2월	8
감봉 1월	6
견책(영창·근신 포함)	4

경 고	해양경찰청장	불문경고	2
		직권경고	1
		주의	0.5
	해양경찰교육원장 · 지방해양경찰청장	불문경고	1
		직권경고	0.5
		주의	0.25
	해양경찰연구센터장 · 해양경찰서장 · 해양경찰정비창장 ·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 합정장	불문경고	0.5
		직권경고	0.25
		주의	0.1

비고

1. 군의 표창은 통합방위작전 또는 해양경찰업무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공로로 받은 표창만 인정한다.
2. 제1호를 제외한 기관장의 표창은 해양경찰업무와 관련된 공로로 받은 표창만 인정한다.
3. 상벌은 현재 계급에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받은 포상과 **신임교육 기간 중 받은 포상은 임용예정** 계급의 “상”에 포함한다.
4. “상” 점수 합계에서 “벌” 점수 합계를 뺀 점수의 2분의 1을 평정점으로 하되, 최고점수는 5점, 최하점수는 0점으로 한다.
5. 종전의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해양경비안전서장,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의 표창은 각각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의 표창으로 본다.

별표 6 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훈련 평정기준

구 분	배점	산 식	비고
상시학습	4	• 지정학습 및 비지정학습 이수 시간	경정이하만 해당하고 지정학습, 비지정학습 등 상시학습의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체력검정	2	• 연 1회 이상 • 등급제	경정이하만 해당하고 체력검정의 평가종목, 평가기준 및 등급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구조역량	1	• 연 1회 이상 • 등급제	경정이하만 해당하고 구조역량의 평가종목, 평가기준 및 등급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사격훈련	1	• 연 2회 • 등급제	경감이하만 해당하고 사격훈련의 평가종목, 평가기준 및 등급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부서육성	1	• 연 1회 이상 • 등급제	경정만 해당하고 부서육성의 평가대상, 평가기준 및 등급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평정 대상기간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6 제5호 비고 제2호 중 “2점”을 “1점”으로 한다.

5. 근무수행태도 평정기준

구 분	감점점수
무단결근 근무지시 위반 경위서 소집불응	1회당 0.1점

비고

1. 평정 대상기간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2. 1점에서 감점점수를 뺀 점수를 평정점으로 하되, 최하점수를 0점으로 한다.

별표 9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자격증 등 가점(제50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점)

구 분		평 정 점
자격증 (0.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중직무분야 중 기계제작·기계장비설비·설치·조선·항공·자동차 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전자 직무분야, 정보통신 직무분야,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안전관리 중직무분야, 환경·에너지 직무분야의 환경 중직무분야, 건설 직무분야의 토목 중직무분야 중 잠수·해양 분야의 기술사·기능장, 2급 해기사 이상, 비행기 또는 회전익 항공기 운송용 조종사, 1급 상담심리사((사)한국상담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으로 한정한다)	0.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의 토목 중직무분야 중 잠수·해양 분야의 산업기사, 보건·의료 직무분야의 보건·의료 중직무분야 중 1급 임상심리사, 3급 해기사, 비행기 또는 회전익 항공기 사업용 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에 따른 실기시험위원(무인비행기·무인헬리콥터·무인멀티콥터·무인비행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2급 상담심리사((사)한국상담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으로 한정한다), 수상구조사(「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를 말한다)	0.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중직무분야 중 기계제작·기계장비설비·설치·조선·항공·자동차 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전자 직무분야, 정보통신 직무	0.3

분야,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안전관리 중직무분야, 환경·에너지 직무분야의 환경 중직무분야, 건설 직무분야의 토목 중직무분야 중 잠수·해양 분야의 기사, 건설 직무분야의 토목 중직무분야 중 잠수·해양 분야의 기능사, 보건·의료 직무분야의 보건·의료 중직무분야 중 2급 임상심리사, 4급 해기사, 1급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종목 중 수영 또는 스킨스쿠버 종목으로 한정하고, 수영 또는 스킨스쿠버 종목에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수영 또는 스킨스쿠버 종목에 선수 경력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인명구조요원(「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을 말한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에 따른 지도조종자(무인비행기·무인헬리콥터·무인멀티콥터·무인비행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중직무분야 중 기계제작·기계장비설비·설치·조선·항공·자동차 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전자 직무분야, 정보통신 직무분야,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안전관리 중직무분야, 환경·에너지 직무분야의 환경 중직무분야, 건설 직무분야의 토목 중직무분야 중 잠수·해양 분야의 산업기사, 5급 해기사, 2급 응급구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잠수기능사, 수상구조사(「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	0.2

		를」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를 말한다), 인명구조요원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을 말한다),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 조제2항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종목 중 수영 또는 스킨스쿠버 종목으로 한정한다), 계기비행증명,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에 따른 초경량비행장 치 조종자(무인비행기·무인헬리콥터·무인멀티콥터·무인비행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특급·1급·2급·3급), 스쿠버다이빙 강사 ·상급강사·강사교육관((사)대한수중·핀수영협회에서 발급하 는 자격으로 한정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정보통신 직무분야 의 통신 중직무분야 중 통신 분야의 기능사, 선박교통관제사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 람을 말한다), 「전파법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해상무선통신 사	0.1
전문	학위취득	박 사	0.5
교육		석 사	0.3
(0.5)		학 사	0.2

비고

1. 자격증 및 학위취득 가점은 각각 최대 0.5점까지 부여할 수 있고, 해당 계급 (승진후보자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에서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2. 임용 전 신입교육과정 중에 취득한 자격증 및 학위는 임용예정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위 표에 규정한 자격증과 같거나 같은 수준이라

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은 위 표에 따른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4.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해당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근무성적 평정표(경정 이하)

○ 평정대상자

소 속: 20 . . .부터

계 급: 20 . . .까지

성 명:

제 1 평 정 요 소							제 2 평 정 요 소							총 계	단 계 별 평 정 자	
항목 평정	해양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 여도	포 상 실 적	직장훈련	견문제출	근무수행 태도	계	항목 평정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계
배 점	3	5	8	3	1	20	배 점	9.5		11		9.5		30	50	
내 용	기본 근무 실적 평정, 별표 6 제1 호의 해양경찰업 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평정기준 에 따른다.	상별점수 상계, 별표 6 제2호의 포상 실적 평정기준 에 따른다.	체 력 검 정 및 능 력 개 발 등 평 가, 별표 6 제3호의 직 장훈련 평 정 기준에 따른다.	견문제출, 견문활용 도에 따른 능력 평가, 별표6제4 호의 견문 제출 평정 기준에 따 른다.	근태사항 평정, 별표 6 제5호의 근무수행 태도 평정 기준에 따 른다.	소 계	내 용	· 담당 직무의 양 · 직무수행의 정확성 · 직무수행의 신속성		· 직무 지식 및 기술 · 직무의 이해력 · 창의력 및 기획력 · 관리 및 통솔력		· 성실성 및 준법성 · 친절도 및 협조성 · 적극성 및 책임성		소 계	제1평정 + 제2평정	1차평정자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차평정자 계급
1차 평정							1차 평정	3.5		4		3.5				성명 (서명 또는 인)
2차 평정 (확 인)							2차 평정 (확인)	3.5		4		3.5				3차평정자 계급
3차 평정 (확 인)							3차 평정 (확인)	2.5		3		2.5				성명 (서명 또는 인)
비 고	○ 제2평정 분포비율															
	· 수(29점 이상)															
	20% 40%															

※ 제1평정요소는 1차평정자가 평정, 2·3차평정자는 관련 자료에 따라 확인합니다.

비고란에는 항목별 평정 자료의 내용을 간략히 기재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7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경력·가점 평정표

평 정 대상자	소속		평정자	직위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확인자	직위	
	현 계급 임명 연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경력	구분	현 계급 재직기간	산입 또는 제외 기간	경력 평정기간	평정점
	기본경력				
	초과경력				
※ 산입 또는 제외 사유:				계	

구분		종류(등급)	취득일(평정일)	평정점
언어능력	국어 능력 검정급수			
	외국어 능력 검정점수			
자격증				
학위취득				
적극행정				
			계	

※ 비교: 경력 평정 시 산입 또는 제외기간이 있는 사람은 해당란에 적용기간을 기재합니다.

1. 산입기간: 제4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 1) 영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 2) 영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기간,
- 3) 재임용된 계급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 4) 시보임용기간,
- 5) 5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 근무경력 중 20퍼센트, 6) 사법연수생 수습 기간,
- 7) 영 제53조제5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근무기간, 8) 강등 직전 계급 재직기간

2. 제외기간: 제45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간

- 1) 휴직기간(제4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2) 정직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제4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3. 적극행정: 제50조제1항제3호에 의한 가점평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4,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2 및 별표 4와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격증 가점 평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격증을 취득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자격증 가점 평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격증 가점 평정에 관한 특례) ① 자격증 가점을 상향하는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자격증을 취득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취득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9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	
연 락 처	(032) 835 - 2335